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약속된 내용을 이행 받을 수 있고, 갑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이행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계약 시 보증인 및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시키거나 본 시설에서 원상회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 상해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지불하며 법적인 책임도 가진다.
- ④ 이용자 및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⑤ 이용자 및 이용자의 월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및 월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⑥ 이용자 및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즉시통보 의무
- ⑦ 신원보증인이 장기출장 및 신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선정 의무
- ⑧ 이용자나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17조 (이용 및 이용시 지침물)

이용자는 이용 시 개인 소모품을 시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참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센터는 이용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9조 (이용 및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 및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및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② 이용 및 이용계약 후 10일 이내는 적응기간으로 하며, 시설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서비스시간은 평일 08:~21:30, 토요일과 공휴일은 08:00~17:00 제공한다.
- ④ 계약의 효력은 계약 기간 동안만 발생하며, 갑과 을의 합의하에 계약 기간이 변경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시설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이용 및 이용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연장)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센터는 이용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

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제1호의 경우, 보호자나 이용자가 제출한 장기요양 인정서를 계약 연장의 동의로 판단하며, 계약 기간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갱신되거나 등급 변경을 반영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비용 변경 발생은 즉시 반영한다.

1. 유효기간 만료, 등급 변경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시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시
3.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시

②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약식 계약서를 작성한다. 약식 계약서는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계약기간, 이용료 변경동의, 계약자 기본신상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22조 (계약변경)

① 갑과 을의 계약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한다.

제23조 (계약해지 및 종료)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퇴소해야 할 경우에는 을의 신병인수인은 즉시 을의 신병을 인수해야 한다.

① 갑의 해지 사유

1. 시설의 경우에 장기요양등급 갱신 결과, 6등급 이하로 재가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2. 이용비용 및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3. 이용자 및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4. 지병이 심각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우(최대 10일 이상)
5. 시설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이용자와 보호자가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을의 해지사유

1. 이용자는 본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2. 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을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④ 갑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을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⑤ 을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을의 개

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을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24조 (계약의 종료)

- ① 을이 사망하였을 경우
- ② 갑 또는 을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제27조 (월 이용 및 이용비용)

- ① 이용비는 매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장기요양수가에 의거한다.(해당 연도 장기요양 보험수가 적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별표1,2에 근거하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 ② 이용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익월 10일경 보호자 가정으로 인편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 말일까지 후불로 청구하며, 이용비가 보호자의 명의로 납부되도록 한다.
- ③ 이용자가 퇴소한 경우 퇴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용비를 정산한다.
- ④ 시설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반은 15%,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9%, 6%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
비급여인 식재료비, 간식비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⑤ 등급외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규정에 따른다.

등급	내역	기초
1~6등급	1일 해당수가 X 해당 월 일수 X 본인부담율 (15%, 9%, 6%)	면제

제28조 (이용 및 이용비용의 변경방법)

- ①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② 비급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 합의를 거쳐 이용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비급여 항목(식비 및 간식비 등)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구분	내역	비고
식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준함	간식포함(1일2회 제공)

제30조 (미이용 비용산정)

- ① 갑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31조 (이용비의 수납)

- ① 이용비의 수납은 시설의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매월 15일 전에 수납되도록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직접 현금을 통해 수납할 경우 이용비 납부 영수증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40조 (배상 책임 및 면책범위)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 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갑)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을의 건강상태가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을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갑이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별표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3. 01. 01. 기준)

- 이용대상 : 장기요양 등급, 등급 외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정 원 : 21명
- 운영시간 : 월~금 08:00~21:30(송영 시간 포함)
토, 공휴일 08:00~17:00(송영 시간 포함)
- 차량운행 : 영등포구 관내(센터기준 5km내, 1시간내 송영서비스 제공 가능한 경우)
- 주·야간 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원	35,760원	33,010원	31,510원	30,000원	30,000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원	47,960원	44,270원	42,770원	41,240원	39,450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원	59,660원	55,080원	53,580원	52,050원	52,05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70,950원	65,720원	60,720원	59,190원	57,690원	52,050원
13시간 이상	76,080원	70,480원	65,110원	63,600원	62,100원	52,05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이를 반영함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비급여 항목: 1식 3,000원 포함/간식 1,000원(간식 2회 제공)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별표 2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수납 기준

★ 비급여 수가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① 1식 식사재료비	3,000원	* 식사 2회는 6,000원
② 간식비	1,000원	* 간식 2회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시설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 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 비의 일종임
 -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 세부기준
 - (1)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하면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매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은 비용수납 불가
 -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